방송통신위원회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2011. 10. 24.(월)

보도자료

2011년 10월 24일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과장(2430) 나. 뉴미디어정책과 김정원과장(2450)
다. 시청자권익증진과 박준선과장(2690) 라.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(2350)

[보고안건]
가. 시장조사과 전영민과장(2630) 나. 통신정책거획과 이상학과장(2510)
다. 통신이용제도과 최성호과장(2550) 라.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(2350)

2011년 제59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**의결안건 4건**과 **보고안건 4건**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

o 추후 재논의

나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

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(주)티브로드중부방송, (주)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, (주)영서방송,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(주)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

o (주)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등 3개사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, (주)영서방송에 대해서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함

< 재허가조건 >

사업자명	재허가 조건 내용
공 통 (4개사)	◦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%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송통신위원회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◦ 매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◦ 재허가 신청 시 제출된 디지털전환 관련 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㈜영서방송	◦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
다.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·과장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건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o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허위·과장 영업 행위로 시청자의 불만을 유발한 3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을 심의하여 의결함.

< 사업자별 제재조치 >

대상사업자	조치내용
㈜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울산케이블티브이 등 **2개 사업자**	시정명령·과징금(1500만원) 병과 처분
㈜씨앤앰 마포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북부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경동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우리케이블티브이, ㈜씨제이헬로비전 중앙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 경남방송, ㈜티브로드 한빛방송, ㈜티브로드 수원방송 등 **9개 사업자**	시정명령
㈜씨앤앰 중랑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노원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서서울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강동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경기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용산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송파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동서울케이블티브이, ㈜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 충남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 영남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 금정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, 남인천방송㈜ 등 **15개 사업자**	경고
㈜씨앤앰 서초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, ㈜씨제이헬로비전 마산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 대구동구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 영동방송, ㈜티브로드서부산방송, ㈜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 등 **7개 사업자**	주의

라. 2011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o 방송법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, 방송사업자가 2010년에 실시한 방송 내용·편성·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의결함

<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: 153개 사업자, 340개 채널 >

	지상파			SO	위성		PP		합 계
	TV	R	DMB		일반	DMB	보도	홈쇼핑	
사업자 수 (채널수)	47개*+3개(DMB전용) (TV 63개, R 155개, DMB 19개)			94개	1개	1개	2개	5개	153개 (340개)

< 방송평가 영역 : 내용, 편성, 운영 >

■ 내용영역 : 방송프로그램의 품질, 자체심의 운영실적,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등
■ 편성영역 : 법정 편성비율 준수여부, 어린이·장애인 프로 및 재난방송 등에 대한 편성의 적절성
■ 운영영역 : 경영적정성, 재무건전성, 인적자원·기술에 대한 투자,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

[보고안건]

가. 「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사항 (첨부1 참조)

o 방송법시행령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-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4개의 금지행위* 유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명시함

* ①방송수단 확보(국민전체가구수의 75/100 이상, 올림픽·월드컵은 90/100 이상), ②실시간 방송 실시, ③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·지연 금지, ④뉴스 보도·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 제공

나.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(첨부2와 별도 보도자료 참조)

o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,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,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개선을 포함하는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다.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`

o 이동전화 소량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계획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라.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(첨부3 참조)

o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장비의 국내 수요기반 확대를 독려하고, '11. 12월 방송 예정인 종편PP에 대한 방송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〈 첨부 1 〉

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(고시) 제정안

□ 주요 내용

○ **(방송수단 확보)** 중계방송권자가 방송수단(자가 또는 임대)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검증 등에 관하여 규정

○ **(실시간 방송)** 중계방송권을 확보한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여야 하지만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

- 재난방송, 비상사태, 다수 행사로 나뉘어져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, 천재지변, 법원의 판결, 실시간 방송 필요성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

○ **(중계방송권 거래 거부·지연 금지)** 중계방송권 판매·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 하거나, 판매자가 현저히 높은 판매가격 설정 또는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거래 거부·지연 행위로 규정

- 다만, 구매자측 제시가격·조건 등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, 구매자의 시설·인력 문제에 따른 방송 송출 불가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판매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한 경우 등 예외 인정

○ **(자료화면 제공)** 중계방송권자등이 국민관심행사의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,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기준을 제시

- 올림픽·아시안게임은 1일 최소 4분 이상, 월드컵 등 단일종목은 2분 이상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

- 다만, 자료화면을 제공받은 자가 중계방송권 권리표시(5초이상 자막) 미이행 또는 뉴스보도·해설 등 정규 뉴스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

□ 향후 계획

○ 고시(안) 행정예고, 부처 협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: ‘11.11월
○ 고시(안)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및 규개위 규제심사 : ‘11.12월
○ 고시(안)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고시안 확정 및 공포 : ‘12.1월

〈 첨부 2 〉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□ 주요 내용

1.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

○ **(개정사유)** 장애인,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요금감면 서비스 추가 지정 및 대상자 확대 필요

< 취약계층 요금감면 현황 >

요금감면 서비스	요금감면 대상자
o 시내·시외전화, 이동전화, 무선호출, 번호안내서비스, 초고속인터넷	o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中 자활사업참가자·희귀난치성환자·장애(아동)/보육수당수급자 등

○ **(개정내용)** 요금감면 서비스에 **인터넷전화***를 **추가**하고,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**양육수당 수급자**와 **장애인연금 수급자**를 **포함**

* 인터넷전화(VoIP)는 서비스 품질개선, 번호이동성 도입 등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, '11.9월 현재 인터넷전화의 가구대비 점유율(VoIP가입자 1,044만/총가구수 1,738만)은 60.1%에 달함

☞ VoIP 증가추이 : '08년말: 248만명 → '09년말: 666만명 → '10년말: 914만명 → '11.9월: 1,044만명

○ **(기대효과)**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감면 및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로 사회적 **취약계층**에 대한 **통신비 부담 경감**

- VoIP사용자 77만명이 연 215억원(1인당 27,922원),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 55천명이 연 57억원(1인당 103,636원)으로 **연간 총 272억원**의 감면효과 발생

2.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

○ **(개정사유)**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는 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,

- 사업자 등록 시 기술계 자격자(기술사, 기사, 산업기사)로 제한한 기술인력 요건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완화 필요

< 별정통신사업자 현황 >

구 분	별정1호	별정2호	별정3호	별정4호	
정 의	교환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 제공	**교환설비 없이** 기간통신역무 제공	구내통신 사업자	(**교환설비** 보유 or **미보유**)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이동통신역무 제공	
기술인력 등록요건	기술계 3인↑ & 기능계 2인↑	기술계 1인↑	기술계 1인↑ & 기능계 1인↑	기술계 3인↑ & 기능계 2인↑ (보유) / 기술계 1인↑(미보유)	
사업자수	41개(5.7%)	**616개(84.7%)**	53개(7.3%)	**17개(2.3%)**	**(합계) 727개**

○ **(개정내용)**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고,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된 **기능계 자격자**(기능장, 기능사)를 기술인력 요건에 **추가**

※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은 인터넷전화 등 서비스간 연동장치, 라우터, 서비스 제어시스템 등을 조작·관리하는 역할 수행

○ **(기대효과)**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(별정2·4호)의 등록 부담 경감으로 **신규사업자**의 **진입**을 **촉진**하고 **고졸자**의 **취업기회 확대***도 기대

* '10년도 기능계 자격증 합격자 총 40,687명 중 32,637명이 만 16~18세(고등학생에 해당)로 전체 합격자의 80% 이상을 차지

3. 별정·부가통신사업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제도 개선

○ **(개정사유)** ① 현행 '변경하려는 때'로 막연하게 되어있는 별정·부가통신사업자의 변경등록·변경신고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

※ 변경등록·신고사항 : 상호·명칭·주소, 대표자, 역무의 종류, 자본금·기술인력(별정에 한함)

② 한편, 별정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이용약관을 제출하고 있으나, 약관변경 시에는 재등록(신고)에 관한 규정이 없어 등록시점과 다른 부당한 약관에 대한 관리 수단 마련 필요

○ **(개정내용)** ① 별정·부가통신사업자의 **변경등록·변경신고 기한**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**'30일 이내'**로 명시하여 규정

② **MVNO**(별정1·2·4호 중 무선재판매 사업자)가 등록 시 제출한 **이용약관**을 **변경**할 경우 **7일 이내** 방송통신위원회에 **신고**하도록 함

※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시 이용약관을 제출토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되,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MVNO에 한해 적용

☞ **(MVNO 현황)** '10. 9월 현재 **18개 사업자**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, **가입자**는 **335천**여명

○ **(기대효과)** ① 변경등록·변경신고 기간의 명확화로 **사업자**의 **혼란**을 **방지**하고, ② MVNO가 **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**을 **예방**

4. 이용자 피해 확인 절차 마련

○ **(개정사유)**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(무단가입, 부당과금 등)를 한 경우,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

-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, 개별 이용자는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, 인식한 후에도 관련 정보가 파기되어 피해 구제가 어려움

○ **(개정내용)** 원상회복에 필요한 **자료 보존**과 이용자에 대한 **피해사실 통지**를 시정조치 사항에 추가하고, 그 **이행기간***을 신설

* 자료보존은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, 피해사실 통지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

○ **(기대효과)**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**이용자 권리 구제**와 사업자의 **자발적인 손해배상**을 촉진

5.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 구체화

○ **(개정사유)**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, 심사기준이 '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'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할 필요

※ 승인대상설비 : 새로운 전기통신설비 기술방식(교환, 전송방식 등)에 의해 최초로 설치되는 설비. 단, 신고대상인 유선분야 설비는 제외

○ **(개정내용)** **심사기준**을 '사업계획의 타당성, 전기통신설비 보안대책의 적정성,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' 등으로 **구체화** 하여 규정

※ 사업계획서, 전기통신설의 보안대책, 국내외 규격, 연구개발 현황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부합되게 그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

○ **(기대효과)** 중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요청하는 사업자에게 **심사기준의 예측성**을 높여주고,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심사기준 적용 방지

□ 향후 일정

○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: ’11. 10월 ~ 11월

○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 : ’11. 11월 ~ 12월

○ 법제처 심사 및 차관·국무회의 제출 : ’12. 1월

〈 첨부 3 〉

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

□ 주요 내용

1. 디지털 전환 실적 관련 평가항목 신설

○ **(개정 사유)**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지상파 방송사의 노력을 독려하고 유료방송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촉구

○ **(개정 내용)** '운영영역'에 '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' 평가항목을 신설하고, 지상파는 '13년, SO·위성은 '15년 방송실적까지 한시적으로 적용

- 배점은, 지상파TV 100점(총점 900점→1,000점), SO·위성 50점(총점 500→550점)

2. 인증방송장비 관련 평가 실시

○ **(개정 사유)** 방송장비의 국내 수요 기반 확대를 통해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를 유도

○ **(개정 내용)** '운영영역'의 「방송발전을 위한 노력 / 방송기술투자 평가」 항목에 TTA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 인증 제품 투자에 대해 평가를 추가

- 배점은 지상파 TV 5점, 그 외 매체는 지상파 TV의 2/3로 환산

3. 종합편성 PP 관련

○ **(개정 사유)** '11년 12월 방송 예정인 종편 PP에 대한 평가항목 마련이 필요

○ **(개정 내용)** 모든 영역에서 지상파(900점)와 보도 PP(500점)사이의 중간적 배점을 적용하여 총점 700점으로 배점

- 매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영역의 ‘매체특성에 따른 편성 적정성’ 항목에서 ‘제작프로그램 편성’ 평가항목을 신설

·기존 PP의 구매위주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편 PP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능력에 대한 평가(구매편성비율/제작편성비율)를 신설